

※ 채용홈페이지 구축과정에서 실제 온라인 작성서식, 구성 등은 달라질 수 있음

1. 지원 자격 [건축기사]

공고일(2026.5.7.) 기준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건축 관련 분야 (설계, 공사, 감리, 발주형 사업관리 등)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
1. 지원 자격 [구조화금융 전문가]

공고일(2026.5.7.) 기준 증권사, 은행, 자산운용사 등에서 구조화 금융 업무 [유동화증권(ABS)발행 및 관련 업무]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
2. 필수자격 사항 [건축기사]

자격증	발급기관	등록(자격)번호	취득일자
건축기사			

3. 우대사항

- ※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
- － 단, 채용단위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 비율(만점의 10% 또는 5%)에 따라 가점 적용

취업지원대상자 (보훈)	해당 여부 / 가점 비율 (5%, 10%) / 보훈번호			
장 애 인	해당 여부 / 장애정도 (경증, 중증) / 장애 내용			
가점 자격증 (구조화금융 전문가)	자격증	발급기관	등록(자격)번호	취득일자
	한국공인회계사			
	CFA level.3			

4. 가점 외 자격 사항 (직무 혹은 직무 관련 지식 자격증)

※ 작성 시 주의 사항

- － 최종 합격한 자격증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－ 자격 취득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－ 자격증을 기재한 경우, 추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－ 가점 외 자격 사항은 면접전형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자격증(검색)	등록번호	발행기관	취득일자

5. 경력 사항

- ※ 경력 사항은 지원자격 확인, 면접전형 경력평가에 적용
- ※ 채용공고문 상에 기재된 지원자격 관련 근무 경력에 한정하며, '경력증명서'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기재
- ※ 경력 산정 유의사항
 - 경력은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,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
 - 통상근로(전일근무, 주당 40시간 근무)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
 - *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 등)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
 -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,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
 - 파견근로와 인턴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경력증명서 근무 기간과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
 -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
 -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관명, 근무 기간, 담당업무*, 전일제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 - * 건축기사 : 건축 관련 분야 설계, 공사, 감리, 발주형 사업관리 등
 - * 구조화금융 전문가 : 유동화증권(ABS)발행 및 관련 업무
 - 지원자격을 통해 명시한 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작성 시 주의 사항
 - 근무처, 근무기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- 경력 기간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- 재직 중인 경우 입사지원서 마감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- 경력을 기재한 경우 추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근무처	근무기간	직위	재직여부	근무형태1	근무형태2	주당 근로시간	퇴사사유
			재직중/퇴직	정규직/ 계약직	전일제/ 시간선택제		
담당업무							